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24. 07. 05. 규정 제258호
개정 2025. 06. 19. 규정 제2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시설물의 유지·안전 관리 및 진흥원 시설 이용자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진흥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진흥원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진흥원의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복무규정,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진흥원 본원을 포함한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진흥원의 원장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진흥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상태 및 조건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진흥원이 발주한 제작·수리·구매·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약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도급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위탁·위임 받거나 그 밖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1. “관계수급인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12.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설비·유해물질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시설물·설비·유해물질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6.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 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3. 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는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사업주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2.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조성
3.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② 근로자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천시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 이행

제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 ①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관할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사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지원 등
4. 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5.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연락망 체계 및 대피방법 훈련 등
6. 위생 및 휴게시설 이용의 협조
7.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은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따라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④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주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안전관리 조직)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 및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같이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사항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제8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계획하고 실행여부 등 진흥원 소속(도급, 용역포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총괄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총괄 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현황 및 발생보고에 관한 사항
7. 근로자건강진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직무상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두어야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 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3. 시설물・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예산의 반영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필요 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관리자)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 강화에 따라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업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업무관리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담 외의 모든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따른 협조
2.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4. 비상연락체계 구축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업무관리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을 관리하며, 필요 시 안전보건 관리 총괄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담당자)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담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자의 업무 통솔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자) ① 진흥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점검,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4.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
5.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관리자) ① 진흥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보건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4. 임직원 건강검진의 시행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증진 활동
5. 기타 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 교육과 안전관리조직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7조(안전관리 조직 직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교육결과 기록・보존) 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강사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안전보건계획의 수립)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을 매해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은 원장이 결정하여 정한다.

제2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사업주는 위험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이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한다.
③ 사업주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해당 물질의 경고표지 등을 부착 및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한다.

제22조(안전보건점검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점검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점검표 등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안전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및 복장 등의 상태
7.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8.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장의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경우 조치사항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작업의 중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긴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강진단결과를 보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만40세 이상인 임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실시한다.
⑤ 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30일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하며 유해요인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유해요인 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자가 교육 및 안내하는 사항을 적극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에 관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와 작업 공정 등의 변경 시 해당 공정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소분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한다.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작업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중에는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구급용구 등) ① 관리감독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사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소독약
3. 지혈대, 들것
4. 화상약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구급용구를 필요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근로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연락망 구축) ① 사업주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산업재해 현황 및 통계・분석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이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대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37조(위험성평가의 주기) ①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제38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의 사전조사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추정 및 결정
5. 위험성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세부계획
7. 그밖에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징계)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3. 그 밖에 상기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진흥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문서의 보존연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7호의 경우 2년,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5년, 제5호의 발암성확인물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서류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제41조(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기계,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해당 사업부서에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2024. 07. 05. 규정 제2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6. 19. 규정 제2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06. 1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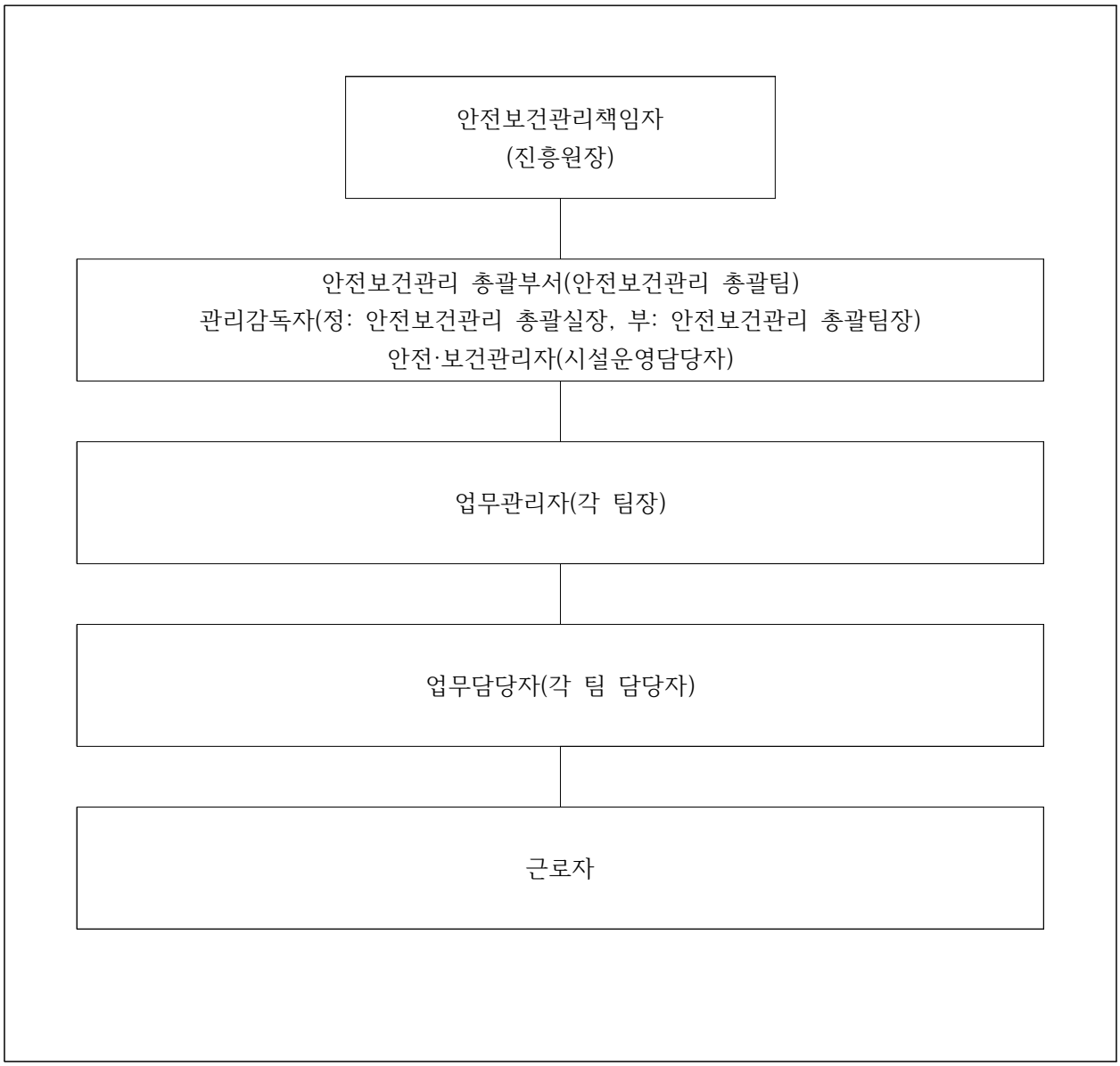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단 계	업 무	수 행 자
사고발생 구조요청	• 작업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	현장 근무자 최초 발견자
응급처치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현장 근무자 최초 발견자 의료 전문가
사고보고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현장 근무자 → 관리 감독자
사후처리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사고조사 종료시까지)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